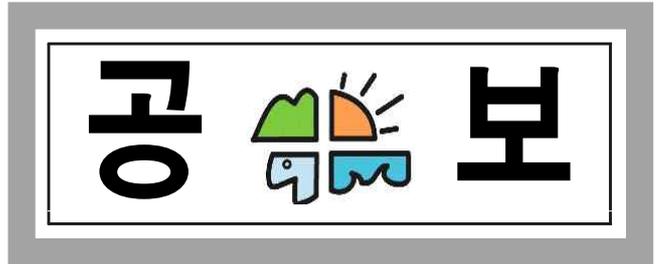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020호 2016년 10월 19일(수)

공 고

-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
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0월 19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정이유

상위법령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장사시설 감면대상자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시체”를 “시신”으로 용어 정비 (안 제2조, 제11조, 제17조 및 제18조)

나. 장사시설 감면대상자 정비 (안 제12조 및 제21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. 11.9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여성가족과)에게 제출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(찬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 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
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/ 속초시청 여성가족과(노인복지팀)
- 연락처 : 033-639-2044 (FAX 033-639-2739)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노인복지팀(033-639-2044)으로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의 “시체(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나”를 “시신(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, 제4호, 제5호 및 제7호의 “시체나”를 각각 “시신이나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제2호 중 “산모”를 “사산아의 부 또는 모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중 “시체”를 “시신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“50%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제17조제3호 중 “시체로서”를 “시신으로서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전단 중 “시체”를 “시신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제30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의 공설봉안시설란 중 속초시 봉설봉안묘 부부단 다음에 “제21조제1항 관련자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제1항 관련자	1기당	50퍼센트 감면	20퍼센트 감면	-	-
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	-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"매장"이란 <u>시체(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(葬事)하는 것을 말한다.</u>	1. ----- <u>시신(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. 이하</u> ----- <u>같다)이나</u> ----- -----.
2. " 화장"이란 <u>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.</u>	2. ----- <u>시신이나</u> ----- 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"개장"이란 매장한 <u>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</u>	4. ----- <u>시신이나</u> ----- -----.
5. "분묘"란 <u>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.</u>	5. ----- <u>시신이나</u> -----.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7. " 화장시설"이란 <u>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</u>	7. ----- <u>시신이나</u> -----.
8. ~ 13. (생 략)	8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용료) ① (생 략)	제11조(사용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관내거주자와 관	③ -----

자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로 구분하여 정한다.

1. 2. (생략)

3. 시 지역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시체로서 승화원에서 화장한 경우는 관내거주자로 본다.

4. (생략)

제18조(사용기간) ① (생략)

② 무연고 사망자 시체, 무연분묘 개장유골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. 10년이 지난 유골은 집단으로 자연장 하여야 한다.

③ ④ (생략)

제21조(사용료 등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2. ~ 5. (생략)

② ③ (생략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

시 신 으 로 서

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사용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시신-----

-----.

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사용료 등 감면) ① -----

-----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
을 제외하고는 「장사 등에 관한
법률」을 준용한다.

<삭 제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
4. 교육급여
5. 해산급여(解産給與)
6. 장제급여(葬祭給與)
7. 자활급여

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.

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(이하 "차상위자"라 한다)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3조(공설묘지 등의 사용료·관리비의 부과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 설 묘지·공설 화장시설·공설 봉안시설 또는 공설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 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 우 사용 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, 시설물 설치·조성비용, 지역주 민 복지증 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.

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 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·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,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,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(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2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